

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-82호

「초등학교 통학구역」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2일

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



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변경(안) 행정예고

1. 취 지

합리적인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근 학교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,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학구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실시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

- 내성초 통학구역인 거촌2리(12통/1~4반), 내성2리(2통/1~7반), 내성3리(3통/1,3~7,10~12반), 내성4리(4통/4~16반), 내성5리(5통/1~19반), 석평1·2·3리 지역을 내성초·물야초·봉성초·동양초·법전중앙초·상운초 자유학구로 조정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·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

나. 초등학교 공동 통학구역 개편 등

- 기존 '경북도내 자유학구'로 지정되어있던 일부 구역을 인근 지역(안동·울진·영양)과의 공동 통학구역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통학구역 설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
- 일부 중복지정·누락된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학부모 등의 편의 향상

3. 적용시기: 2022학년도 신입생 취학(배정) 시

4. 일부 변경안 및 신·구 대비표: 별첨

5. 공고기간 : 2021. 9. 2.(목) ~ 9. 24.(금) (23일간)

6. 의견제출

가.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(참조: 행정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)

3) 제출방법: 우편 및 인편, 팩스

- 우편: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2, (우) 36238

※ 우편접수의 경우 2021. 9. 24.(금)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

- 전화: 054-679-1755, 모사전송: 054-673-9530

나.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최종 확정되며,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(054-679-175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1. 예고 사항				
2. 이해관계인	성명 (명칭)		전화번호	
	주소			
3. 의견				
4. 기타				

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1년 9월 일

제출인 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

비
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